

심 사 보 고 서

-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장 이 복 상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나. 제안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주요내용(제안설명 : 일자리경제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20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관내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 추진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관련 사업
운영에 사용하며,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확보 후 지출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계획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1,820,038	2,049,350	320,000	1,729,350	3,549,388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취약계층 및 취·창업 청년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취·창업 청
년, 상기 대상 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 등의 단체

라. 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869,388	2,000,038	1,869,350	합 계	3,869,388	2,000,038	1,869,350
전입금	2,000,000	2,000,000	-	비용자성사업비	320,000	180,000	14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820,038	-	1,820,038	예치금	3,549,388	1,820,038	1,729,35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9,350	38	49,312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2021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회수 18억 2,003만원과 이자수입 4,935만원으로 총38억 6,93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지원하고, 예치금 35억 4,938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 자금유통의 어려움 등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 지속되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증재원 편성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연목적 :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출연금 지원 계획

(단위:천원)

출연 기관	출 연 금	사 업 명
경북신용보증재단	1,00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보증규모

- 출연금 : 10억원(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에 1,000%를 보증)

※ 500업체(최소) × 최대 2천만원 = 100억원

다. 타 시·군 사례(2020년도)

지자체	용자규모	보증금액		이자지원	상환방식
		조 례	업무협약		
포항시	15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1년거치 4년분할
경주시	7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김천시	500억원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5년간 3%	김천시: 2년 일시상환/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타 시군: 2년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안동시	5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 6%이내(조례)	
구미시	100억원	3천만원 이내	3천만원	2년간 3%	
영주시	3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	
영천시	3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5%	
상주시	240억원	3천만원 이내	3천만원	2년간 3.5%	
문경시	20억원	2천만원 이내	-	2년이내(조례)	
경산시	8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5% 3%이내(조례)	
의성군	6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청송군	5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영양군	15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영덕군	1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	
청도군	50억원	3천만원 이내	3천만원	2년간 2%	
고령군	1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5%	
성주군	4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칠곡군	40억원	협약을 통해	3천만원	2년간 2%	
예천군	60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3%	
봉화군	30억원	1천만원 이내	1천만원	2년간 5%	
울진군	46억원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2년간 2%	
울릉군	7.5억원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2년간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가. 제안이유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1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주요내용 (제안설명 : 투자유치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 설치목적 :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함
- 설치년도 : 2007년 11월 8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계획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9,368,984	101,525	1,000,000	△898,475	8,470,509	

○ 재원조성 : 기금의 이자수입, 전입금

○ 지원기준 : 김천시에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대상 : 김천시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라.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9,470,509	9,570,820	△100,311	합 계	9,470,509	9,570,820	△100,311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1,000,000	1,000,000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368,984	9,431,697	△62,713	예치금	8,470,509	8,570,820	△100,31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1,525	139,123	△37,59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93억 6,898만원과 이자수입 1억 152만원으로 총94억 7,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에 10억원, 예치금에 84억 7,050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차 충전 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바 주차장 조례의 주차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을 명시하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시 감면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 단서 신설(안 제7조제4항)
 -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의 불합리한 부담 감소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 추가(선정방법: 수의계약)
- 전통시장과 수의계약 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 조정(안 제10조제2항)
 - 기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서 ‘운영 수익금의 100분의 20’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신설, 전통시장과 수의계약 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및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의 납부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 요금 감면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법인, 공익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운영 수익금의 100분의20	일시납 또는 3개월 단위 분할납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	전액선납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① ~ ③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u>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한다.</u>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 제13조제3항에 따른 <u>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u>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익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전액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③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익계약	운영 수익금의 100분의 20	일시납 또는 3개월 단위 분할납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익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	전액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금액	전액선납

③ (현행과 같음)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주요내용(제안설명 : 안전재난과장)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각종 인적·자연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3년 2월 27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각종 인적·자연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현장, 응급복구, 재난 예·경보시설 긴급보수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계획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㉑+㉔	비 고
	수입 ㉓	지출 ㉕	증감 ㉔=㉓-㉕		
5,025,397	884,432	644,100	240,332	5,265,729	

○ 재원조성 :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 지원대상 :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 및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등

라.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909,829	5,812,527	97,302	합 계	5,909,829	5,812,527	97,302
전입금	847,432	811,557	35,875	비용자성사업비	644,100	624,100	20,000
보조금			0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5,025,397	4,956,830	68,567	예치금	5,265,729	5,188,427	77,302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7,000	44,140	△7,14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 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전년대비 9,730만원이 증가한 총 59억 9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 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 4,410만원, 예치금으로 52억 6,572만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주요내용(제안설명 : 원도심재생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11년 11월 1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디자인(경상북도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95,602	10,913	5,000	5,913	101,515	

- 재원조성 :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 기금의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
- 지원대상 :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업자

라.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6,515	100,602	증5,913	합 계	106,515	100,602	증5,913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5,000	5,000	0
보조금	10,000	10,000	0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5,602	89,083	증6,519	예치금	101,515	95,602	증5,913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913	1,519	감606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591만원이 증가한 1억 65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 151만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제외 건축물을 확대하고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함.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물 예외 단서신설(안 제19조제1항)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1·2차산업단지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함
- 가설건축물 규정 완화(안 제22조제2호, 제6호, 제7호)
 - 농·임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영농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완화함

- 연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은 제외)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 산림경영관리사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 중 일부 대상 삭제(안 제24조)
- 가설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 중 ‘건본주택, 임시 자동차 차고,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공장 내 창고’는 대상에서 삭제함
-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주기 규정(안 제32조)
-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 실시
-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9조)
-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제외 건물을 확대와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및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 1항 안전관리 예치금 제외 건축물 확대, 제22조제2호·제6호·제7호 가설건축물 규정 완화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맞게 관련조항 변경 및 현행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1항”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제8항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으로, “호선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중전의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전문위원회를”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한다”를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은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내 건축물과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로 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은 제외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

7.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인 것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 제7호부터 제8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로 한다.”를 “시장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7장 건축물의 높이”를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재·태풍 등의 재난주택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축물 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중 신고대상 건축물의 검사대행 소요시간 “2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의 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5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신고대상 건축물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10시간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9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23시간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0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4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심의)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심의한다.</p> <p>②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공동주택관리법</u>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p> <p>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p>	<p>제1조(목적) ----- 「<u>건축법</u>」,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p> <p>-----</p> <p>-----</p> <p>제4조(심의) ① 「<u>건축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p> <p>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p>

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오피스텔 50실 이상

4. 삭 제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과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3.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회 심의 등의 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하거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⑦
(생략)

⑧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⑨·⑩ (생략)

제9조 (소위원회) ①·② (생략)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한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⑨·⑩ (현행과 같음)

제9조 (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 임명한다.

<삭제>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그 심의 등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임명한다.

⑤ ----- .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삭제>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신 설>

<신 설>

(생 략)

제19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1조 (간사 및 서기) -----

팀장-----.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은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9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내 건축물과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 략)

제22조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1호에 따른 농막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후 단 삭제> -----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 (가설건축물) -----

-----.

1. (현행과 같음)
2.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로 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5

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
의 형질변경 대상이 아닐 것

3. ~ 5.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 (건축물의 설계) 영 제18
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
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은 제외하
나.

3. ~ 5. (현행과 같음)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
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
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제
외한다.

7.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
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인 것

제24조 (건축물의 설계) -----

----- 영 제15조제5항 -

----- . 다만, 같은 항 제4호,
제7호부터 제8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삭제>

<삭제>

<삭제>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해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규정의 각 호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로 한다.

② (생략)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2조 (실내건축) ① -----

----- 시장은 사용승

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장 보칙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영 제11
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
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
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
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
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4회로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7장 보칙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 60제곱미터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
회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
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김천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
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
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

제39조 (생략)

- 리·감독 및 위반사항
-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4. 지진·화재·태풍 등의 재난 주택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지역건축물 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수)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1.
- 나. 제안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주요내용(제안설명 : 농식품유통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 시 생산농가의 경제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
- 설치년도 : 2015년 9월 22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 확보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계획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10,343,769	103,437	-	103,437	10,447,206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 지원기준

-지원대상

(1)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잣소

(2) 농작물 6,600㎡, 잣소 30두 이내

※ FTA피해보전 직접직불금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

-지원농가

(1) 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

(2) 농산물 1품목당 1,000㎡ 이상 재배농가

(3) 잣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생산비차액 지원

(1)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

(2) 집행 가능액을 초과 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 적용

※ 생 산 비 : 농축산물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

※ 최저가격 : 최근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 생산비차액 :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

라.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447,206	10,343,769	103,437	합 계	10,447,206	10,343,769	103,437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343,769	10,159,889	183,880	예치금	10,447,206	10,343,769	103,43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03,437	183,880	▲80,443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상근)

-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103억 4,376만원, 1억 343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 343만원이 증가한 총 수입액은 104억 4,72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